

2026년도 한국조직학회

제1차 임시총회 회의자료

- 근 거 : 학회 정관 제19조제1항
- 회의일자 : 2026. 9. 18.(금) 18:00
- 방 법 : 대면 회의 및 실시간 온라인 회의 병행
- 심의의결 및 보고안건 : 이하 자료와 같음

목 차

【심의의결 사항】

제1호 학회 정관 개정(안)

3p

【보고사항】

제1호 2026년 한국조직학회 조직혁신대상 시상 계획

7p

제2호 2026년 한국조직학회 우수 신진학자상 시상 계획

8p

학회 정관 개정(안)

가. 의결주문

- 학회 정관 개정(안)을 다음과 같이 심의.의결한다.

나. 제안사유

- 회장 연임 근거 마련 및 경과조치 신설
- 총회 개회 요건 명확화
-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(구 지정기부금단체) 지정 요건 충족

다. 주요내용

- (1) 현행 회장 1년 단임제를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고, 이를 현 회장부터 적용하기 위한 경과조치를 마련함(정관 제14조 개정 및 부칙 신설)

[신·구조문 대비표]

현행	개정안	비고
제14조 (임기)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	제14조 (임기)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단,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	회장 연임 근거 마련
②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.	②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단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기를 1년으로 할 수 있다.	
<신설>	부칙 제3조(회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제14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본 정관 변경 허가 당시 재임 중인 회장부터 적용한다.	경과조치 신설

- (2) 총회의 개최 정족수 산정 시, 직접 출석 인원 외에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 (위임장 제출자)도 출석 인원예 포함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 학회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함.

[신·구조문 대비표]

현행	개정안	비고
제19조 (총회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,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. ② 총회는 재적 정회원 1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	제19조 (총회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,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정회원 10인 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. ② 총회는 <u>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하여</u> 재적 정회원 1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	개회 요건 명확화

- (3) 공익법인 지정 요건 충족을 위해 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직접 수혜자의 불특정 다수 원칙 명확화,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시기 구체화,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대상 명확화 등을 정관에 반영함(정관 제4조, 제27조, 제33조 개정)

[신·구조문 대비표]

현행	개정안	비고
제4조(운영준칙) ③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·출신학교·직업·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 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.	제4조(운영준칙) ③ <u>법인의 수입은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,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.</u> 법인의 사업은 출생지·출신학교·직업·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 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.	수입의 공익목적 사용 및 직접 수혜자의 불특정 다수 원칙 명확화
제27조(재산) ⑤ 본 학회는 회비, 기부금,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에 대하여 <u>그 수입과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한다.</u>	제27조(재산) ⑤ 본 학회는 회비, 기부금,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에 대하여 <u>그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.</u>	법령상 필수 문구 반영
제27조(재산) ⑥ <u>예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, 당해 12월 31일까지 한국조직학회 홈페이지(http://www.kaos.or.kr)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</u>	제27조(재산) ⑥ <u>예산 및 기부금 활용실적은 매년 4월 30일까지 한국조직학회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. 이때 학회 홈페이지는 국세청 혹은 주무관청 홈페이지 중 1개소 이상이</u>	공개 시기 현실화 및 타 기관 홈페이지 연결 요건 충족

	링크되어 있어야 한다.	
제33조 (해산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법인의 잔여재산은 <u>주무부처에 귀속되어야 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 법인과 유사한 비영리 법인단체에 귀속된다.</u>	제33조 (해산)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때에는 법인의 잔여재산은 <u>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아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.</u>	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요건 구체화

라. 검토의견

(1) 회장 연임 근거 마련을 위한 정관 일부 개정

- **인적 자원 활용의 효율화:** 학회의 임원 후보군이 현실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, 매년 새로운 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현행 제도는 리더십 자원의 조기 소진을 야기함
- **제도적 필요성:** 학회가 정부 기관의 조직진단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대외적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, 대형 프로젝트의 일관된 수행을 위한 리더십의 안정적 유지가 필수적임
- **절차적 타당성:** 정관 제30조(변경 절차)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9월 임시총회 의결 및 주무부처 승인 절차를 거치므로 법적·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됨
- **기대 효과:** 회장 연임 근거 마련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고, 편집위원회와의 규정 조화를 통해 조직 운영의 합리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(2) 총회 개회 요건 명확화를 위한 정관 일부 개정

- **실무적 타당성:** 학술대회와 병행되는 총회의 특성상 직접 출석 인원만으로 개의 요건을 채우는 데 따르는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, 위임 제도를 공식화함으로써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.
- **제도적 정합성:** 운영위원회(제22조)와 총회(제19조) 간의 출석 인정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정관 내 규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.

(3)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정관 일부 개정

- **지정의 필수성:** 학회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기부금 유치를 위해서는 공익

법인 지정이 필수적이며, 이를 위해 정관 내 관련 법령 문구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

- **운영의 투명성:** 개정안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실적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회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
- **실무적 유의사항:** 정관 개정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배너 설치 등 실제 공시 요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, 사무국의 철저한 후속 관리가 필요함

마. 참고사항: 정관 변경 절차 (정관 제30조 준수)

- (1) 운영위원회 심의의결(2026.5.5.): 정관 개정안을 심의함
- (2) 회장의 소집요구(2026.8.15.): 정관 제19조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시총회 소집요구
- (3) 주무부처(행정안전부) 허가: 변경된 정관을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함

2026년 한국조직학회 조직혁신대상 시상 계획

☐ 배경

- 학회 정관 제5조제7호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그 소속기관 중에서 조직혁신에 기여한 기관을 발굴하고, 혁신사례의 우수성 및 성과에 대해 시상함으로써 조직혁신 관련 모범사례 확산 및 조직혁신에 대한 각 기관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2026년 조직혁신대상을 시상하고자 합니다.

☐ 지원대상

-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그 소속기관

☐ 지원방법: 평가지표(첨부2)와 추진실적보고서(첨부3)를 참조하여 신청서(첨부1)를 작성하여 제출

☐ 접수마감: 2026. 10. 3. 24:00

☐ 접수방법: e-mail 접수(kaos_001@naver.com)

☐ 심사위원회: 추후 구성(5인 내외)

☐ 평가방법

- 독창성(20%), 효과성(30%), 과학성(20%), 확산가능성(30%)을 “심사위원회”에서 정성평가

☐ 선정자 통보: 2026년 11월 중순 대상기관에 개별 통보

☐ 시상식: 2026년 한국조직학회 정기총회에서 시상

☐ 시상 특전

- 학술적 연계 및 성과확산 기회 부여: 수상 기관 담당자를 차기 학술대회의 특별 세션 발표자로 초빙하여 혁신 노하우 공유의 장 마련
- 홍보 지원: 학회 명의의 '조직혁신 우수기관' 인증 로고 사용권 부여

☐ 신청서류

- 신청서
- 추진실적보고서(양식, 2페이지 이내)
- 증빙자료

2026년 한국조직학회 우수 신진학자상 시상 계획

1. 시상 목적

- 학회 슬로건인 “조직의 혁신과 조직학의 새바람”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한 신진학자를 발굴 및 격려
- 1차~5차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소장 학자들의 학술 활동 참여 유도
- 조직학 분야의 차세대 리더 양성을 통한 학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

2. 시상 개요

- 시상 명칭: 2026 한국조직학회 우수 신진학자상 (KAOS Rising Scholar Award)
- 시상 시기: 2026년 11월 27일(금) 제6차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
- 시상 규모: 3명 (최우수 1명, 우수 2명) ※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

3. 후보자 자격 및 대상

- 자격 요건: 한국조직학회 정회원으로서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인 신진학자 또는 박사과정생
- 대상 논문: 2026년 제1차~제5차 학술대회에서 구두(Oral) 발표를 완료한 논문
- 공동 연구의 경우 신진학자가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에 한함

4. 심사 기준 및 방식

- 심사위원회 구성: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장으로 5인 내외 심사위원회 구성
- 주요 심사 지표:
 - 참신성 (30%): 조직 혁신 및 새로운 연구 트렌드 반영 여부
 - 학술적 기여도 (40%): 연구 결과의 독창성 및 조직학 발전에의 기여 가능성
 - 논문의 논리성 (30%): 연구 방법론의 적절성 및 서술의 엄밀성

5. 추진 일정

- 심사위원회 구성: 2026년 9월 한
- 대상 논문 전수 조사: 2026년 10월 말 (1~5차 발표 리스트 정리)
- 심사위원회 심사: 2026년 11월 1일 ~ 11월 20일
- 최종 수상자 확정: 2026년 11월 23일(월) 개별 통보
- 시상식: 2026년 11월 27일(금) 정기총회

6. 시상 내용

- 상훈: 한국조직학회장 명의 상장 및 상패
- 부상: 소정의 상금
- 특전: 수상 논문이 학회지 『한국조직학회보』 투고 시 우선 심사 및 게재료 면제 혜택 부여